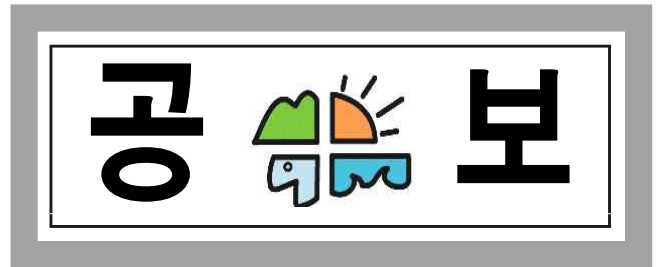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845호 2014년 4월 1일(화)

공 고

○ 신조 및 폐기공인 등록사항 공고..... 2

회 랑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공 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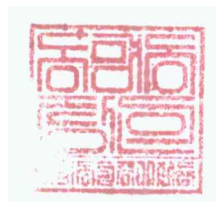
속초시 공인조례 및 속초시수입증지조례 제4조의2 제③항 및 제4조의3 제③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(인증기) 사용에 관한 사항, 제9조(공고)의 규정에 의거 신조 및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4월 1일

속 초 시 장

1. 공인 신조 및 폐기 사유
— 인증기 노후로 인한 인증기교체

2. 신조 공인명 및 인영 : 신조 1개, 폐기 1개

구분	공 인 명	인 영	서체 및 규격	최초사용/폐기 년월일	인증기계기번호
신조	동명동장인 (동명동인증기전용)		휴먼옛체 가로(2.4cm)× 세로(2.4cm)	2014. 04. 02.	F21402051
폐기	동명동장인 (동명동인증기전용)		한글전서체 가로(2.4cm)× 세로(2.4cm)	2002.02.04. (2014. 04. 02.)	F2201050